

연구회 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조명·전기설비학회(이하 “본 학회”라 한다)의 조명 및 전기설비분야의 학술 및 그 응용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신청) 연구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회장에게 신청한다.
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① 설치 취지문
- ② 운영 계획서
- ③ 발기인 명부(학회 정회원 20명 이상)

제3조(설치 승인) 연구회 위원장은 설치 신청 사항을 기획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에 제출하고, 기획위원회에서는 승인여부를 검토한 후 이사회에 상정하여 심의와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.

제4조(구성 및 관리) 연구회는 본 학회 회원으로 구성하고, 연구회 상호 호선으로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및 간사 1명을 선출한다. 위원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, 위원은 위원장이 구성한다.

제5조(내규) 연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회는 본 학회 정관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연구회의 내규를 정하여 운영한다.

제6조(연구회 자격 유지조건) 연구회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각 항을 만족해야 한다. 연구회별 연간 개최 학술회의 수, 정회원 수, 춘추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 수를 매년 일정 수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.

- ① 연간 개최 학술회의, 워크숍 또는 세미나 수 : 1회 이상
- ② 회원 수 : 종신회원을 포함한 년회비 납부 정회원을 합한 수 : 20명 이상
- ③ 춘·추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 수 : 5편 이상

제7조(평가)

- ① 이사회는 연구회를 매 2년(홀수년)에 평가하며, 평가기준은 각 위원장(기획, 편집, 사업, 학술, 국제, 산학협동)이 정한다.
- ② 이사회는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회의 지속 여부를 의결한다.

제8조(재정 및 회계)

①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하며, 학회 정관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.

1. 본 학회의 지원금
2. 회비 및 유료 강습회(이익금의 30%)
3. 각종 사업의 수익금
4. 기타

② 회계연도는 한국조명·전기설비학회의 규정에 따른다.

제9조(가입) 본 학회 회원은 희망에 따라 1개 이상의 연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제11조(폐지) 연구회가 본 학회 정관에 위배된다고 판정될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당 연구회를 폐지시킬수 있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1987년 4월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1993년 1월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2013년 4월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4. 이 규정은 2016년 6월15일부터 개정 시행하며, 이 개정 규정 이전에 설치된 연구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며, 제7조(평가)의 적용은 2017년 7월 이사회일로부터 시행한다.